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건 명	윤호 소유물건 (2026타경172)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법보좌관 표은정
감정평가서번호	HMG-2605-11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맑은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임 소 연

감정평가액	육억육천사백만원정(₩664,000,000.-)			
의 뢰 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법보좌관 표은정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 출 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윤호 (2026타경172)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6.05.20	2026.05.14 ~ 2026.05.20	2026.05.21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개호 이	구분건물	1개호 여	- 백	664,000,000
	합 계					₩664,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구조	면 적(㎡)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213,	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부천시	213-1,		기타지붕				
	원미구	213-2,		12층				
	역곡동	213-3,						
		213-4,		지상층	260.091			
	[도로명주소]	213-5,		지하1층	3,260.4825			
	경기도	213-6		1층	1,434.405			
	부천시	역곡1동		2층	1,524.1444			
	원미구	이편한세상		3층	1,522.7444			
	지봉로143번길	제201동		4층	1,522.7444			
	38			5~9층 각	1,519.3844			
				10층	1,404.128			
				11층	1,286.877			
				12층	1,286.877			
				부속1층	69.7			
				부속2층	5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제7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09.1495	109.1495	664,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46.8776㎡포함)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213	대		908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구조	면 적(㎡) 공 부	면 적(㎡) 사 정	감정평가액	비 고
	2. 동소	213-1	대		1043.1			
	3. 동소	213-2	대		1061.2			
	4. 동소	213-3	대		1054.2			
	5. 동소	213-4	대		1167.5			
	6. 동소	213-5	대		1290.5			
	7. 동소	213-6	대		1295.9			
	8. 동소	213-43	대		2.7			
		대지권의	종류 :	1,2,3,4,5,6,7.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2,3,4,5,6,7.	57.52 ------- 7,823.1	57.52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332,000,000	
						건 물 :	332,000,000	
	합 계						664,000,0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Ⅰ.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소재하며, 역곡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 (역곡1동이편한세상 제201동 제7층 제703호)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건입니다.

2. 기준가치의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4. 기준시점

기준시점은 「감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6.05.20 을 기준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실지조사 기간

「감칙」 제10조에 따른 실지조사는 2026.05.14 ~ 2026.05.20 에 하였으며 해당일을 기준으로 대상물건 확인 및 물적상태를 파악하였습니다.

6.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등 감정평가 관련 법규,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감정평가하였습니다.

7. 감정평가의 방법의 적용

1) 관련규정의 검토

감칙 제7조 제2항 (개별물건 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감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칙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감정평가 방법의 결정

■ 대상물건 구분건물은 「감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 등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인 토지를 일괄로 감정평가함에 있어,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감칙」 제12조에 따라 주된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였으며, 「감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익방식에 의한 수익가액은 평가대상의 특성 등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인근지역 감정평가전례 및 인근 유사부동산의 시세수준 등 참고 가격자료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8. 그 밖의 사항

■ 대상물건의 위치는 문패,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거하여 확인하였습니다.

■ 대상물건의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건축물현황도면에 의거 확인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면 '건물개황도' 참조)

■ 대상물건은 집합건물로서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감정평가 방법의 결정'과 같이 일괄로 감정평가함에도 불구하고, 귀 원의 요청에 의거 토지와 건물에 귀속되는 각각의 배분가격을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함께 병기하였으니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상 표시번호1~8. 8필지로 되어있으나,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1~7 소유권대지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등에 근거하여 분필과정에서의 표시의 착오로 판단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Ⅱ. 대상 부동산의 개요

1. 대상물건이 속해있는 건물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13외			
건물명	역곡1동이편한세상 제201동			
건물의 개 황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사용승인 일 자	2004.07.23
	전 체 층 수	지하 1층 / 지상 12층	주 용 도	아파트

2. 대상물건 집합건물의 표시

기호	층 수	호 수	용 도	전유면적 (㎡)	공용면적 (㎡)	분양면적 (㎡)	대지권면적 (㎡)
1	7	703	아파트	109.1495	46.8776	156.0271	57.52

* 공용면적은 건축물대장상 주 공용부분 합산 면적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

1. 개요

대상물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반입지조건, 부근의 상황, 건물의 구조,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관리상태 등 제반 가치형성요인과 인근지역 내 동유형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괄로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비교사례의 선정

가. 비교사례의 선정기준

①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이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②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

③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등.

나.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

구분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전유 면적 (㎡)	거래시점	거래금액(원)	비고
					사용승인일	단가 (원/㎡)	
#1	역곡동 213외	역곡1동e편한세상 제201동	제10층 제OOO호	84.9664	2026.02.10	540,000,000	-
					2004.07.23	6,355,453	
#2	역곡동 213외	역곡1동e편한세상 제201동	제1층 제OOO호	109.5605	2026.02.25	625,000,000	-
					2004.07.23	5,704,611	
#3	역곡동 202-1외	대림e편한세상 제103동	제8층 제OOO호	109.56	2024.06.20	650,000,000	-
					2004.03.06	5,932,82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인근 유사부동산의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구분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전유 면적 (㎡)	평가시점	평가금액(원)	비고
					사용승인일	단가 (원/㎡)	
①	역곡동 213외	역곡1동e편한세상 제201동	제7층 제OOO호	109.1495	2025.07.18	638,000,000	법원경매
					2004.07.23	5,845,194	

라.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인근 유사 부동산	대상물건과 유사한 부동산의 시세수준은 5,500,000원 ~ 6,300,000원/㎡(전유면적) 내외로 탐문조사 되었습니다.

마. 비교사례의 선정

상기 참고가격자료 중 비교사례선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물건과 위치적·물적 유사성이 높고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거래사례(#1)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구분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전유 면적 (㎡)	거래시점	거래금액(원)	비고
					사용승인일	단가 (원/㎡)	
#1	역곡동 213외	역곡1동e편한세상 제201동	제10층 제OOO호	84.9664	2026.02.10	540,000,000	-
					2004.07.23	6,355,45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결 정 의 견	대상물건 인근 및 유사지역 내 부동산의 거래사례 및 시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사정 보정치	1.000

4.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비교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비교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적정화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시점수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조사 · 발표되지 아니한 기간의 지수는 이전 가장 가까운 기간에 발표된 지수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습니다.

※ 거래사례 #1

권 역	시점수정 기간	지 수	산출내역
부천시 원미구	2026.02.10 ~2026.05.20	아파트	거래시점 : 2026.02.20, 2026년01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6.05.20, 2026년04월 지수를 적용 함 2026.02.20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6년01월) : 100.0 2026.05.20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6년04월) : 100.8 시점수정치 : 100.8/100.0≒1.00800
시점수정치	거래사례 #1 =1.008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 가치형성요인

가치형성요인	
항 목	**세부항목**
(단지)외부요인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및 편의성 : 인근 편익시설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교통 및 도보의 편의성 :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차량 이용의 편의성(가로의 폭, 구조, 계통, 접면), 획지·단지의 여건(경사지, 고저) 교육환경 :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등)과의 거리, 등하교의 편리성, 인근 교육시설의 종류, 학군 선호도 자연환경 : 자연환경(조망, 경관, 풍치 등), 공원 및 녹지 등과의 접근성 거주환경 : 거주환경 조성상태, 거주환경 저해시설(오염시설, 공해 및 소음유발시설, 위험 및 혐오시설 등)의 유무 및 거리
(단지)내부요인	시공사의 브랜드 건물의 규모 : 총 세대수, 건물의 최고 층수 단지의 구성 및 환경 : 동의 배치상태, 동간 거리, 면적별 구성비, 공간적 쾌적성(용적률, 건폐율 등), 조경 및 녹지 등 조성상태 건물의 구조 및 설비 : 건물의 구조 및 재질, 현관구조(계단식, 복도식), 외부구조(판상형, 타워형, 혼합형 등), 내진설계, 필로티 유무, 난방방식(지역난방, 개별난방 등), 각종 설비(승강기 등)의 유무 및 상태 건물의 노후도 :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 리모델링 또는 대수선 여부 주차시설 및 공용시설의 상태 : 세대당 주차대수, 지하 주차장의 유무 및 세대 연결성, 차량 진출입의 용이성, 기계식 주차장의 유무 및 비율,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경로당, 유치원)의 유무 및 상태 보안 및 유지관리 : 보안 및 유지관리 체계 및 관리상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호별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 일조, 채광, 조망 등의 정도, 통풍의 정도, 엘리베이터, 계단으로의 접근성, 소음의 영향 정도, 사생활 침해의 정도, 공용시설·교육시설·교통시설 등과의 접근성, 편익시설의 접근성 향별 효용 전유면적 및 대지사용권 : 전유부분의 면적 크기,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설계 및 구조 : 평면방식(타입 등), 방 및 화장실의 개수, 복층 유무, 1층 전용정원여부, 다락·테라스·베란다 등의 유무, 반지하의 상태(전면 완전 노출형 등)
기타요인	개발사업 가능성 :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편입 여부 행정적 규제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본 건	거래사례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누계치	결 정 의 견
1	#1	1.00	1.00	0.95	1.00	0.950	대상물건은 거래사례 대비 단지외부요인은 대등합니다. 단지내부요인은 대등합니다. 호별요인은 전유부분의 면적 크기 등에서 열세합니다. 종합적인 가치형성요인은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비준가액)

가. 산식

비준가액 = 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비교

나. 적용단가

구 분	비교사례 전유면적당 단가(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적용단가(원/㎡)
1	6,355,453	1.00	1.00800	0.950	6,085,982

다.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층수	호수	전유면적당 단가	전유면적	산출가액 (원/호)	시산가액 (원/호)
1	7	703	6,085,982	109.1495	664,281,892	664,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Ⅳ.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감정평가액의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정된 비준가액을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거래동향, 평가사례 및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 적정성이 있으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기호	층수	호수	감정평가액(원)
1	제7층	제703호	664,000,000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소재하며, 역곡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대상물건 주위는 아파트단지외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입니다.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1호선 역곡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지상 12층 건물 내 제7층 제7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4.07.23)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새시 창호 등입니다.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으로 이용 중입니다. 폐문 부재상태로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 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8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도로상태 등	외곽으로 공도에 접하며, 개별 공동출입문까지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역곡동 213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입니다.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역곡동 213-1, 213-2, 213-3, 213-4, 213-5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곡초-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입니다. 역곡동 213-6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곡초-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입니다. 역곡동 213-43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입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대상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상 표시번호1~8. 8필지로 되어있으나,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1~7 소유권대지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등에 근거하여 분필과정에서의 표시의 착오로 판단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13외 역곡1동이편한세상 제201동 제7층 제7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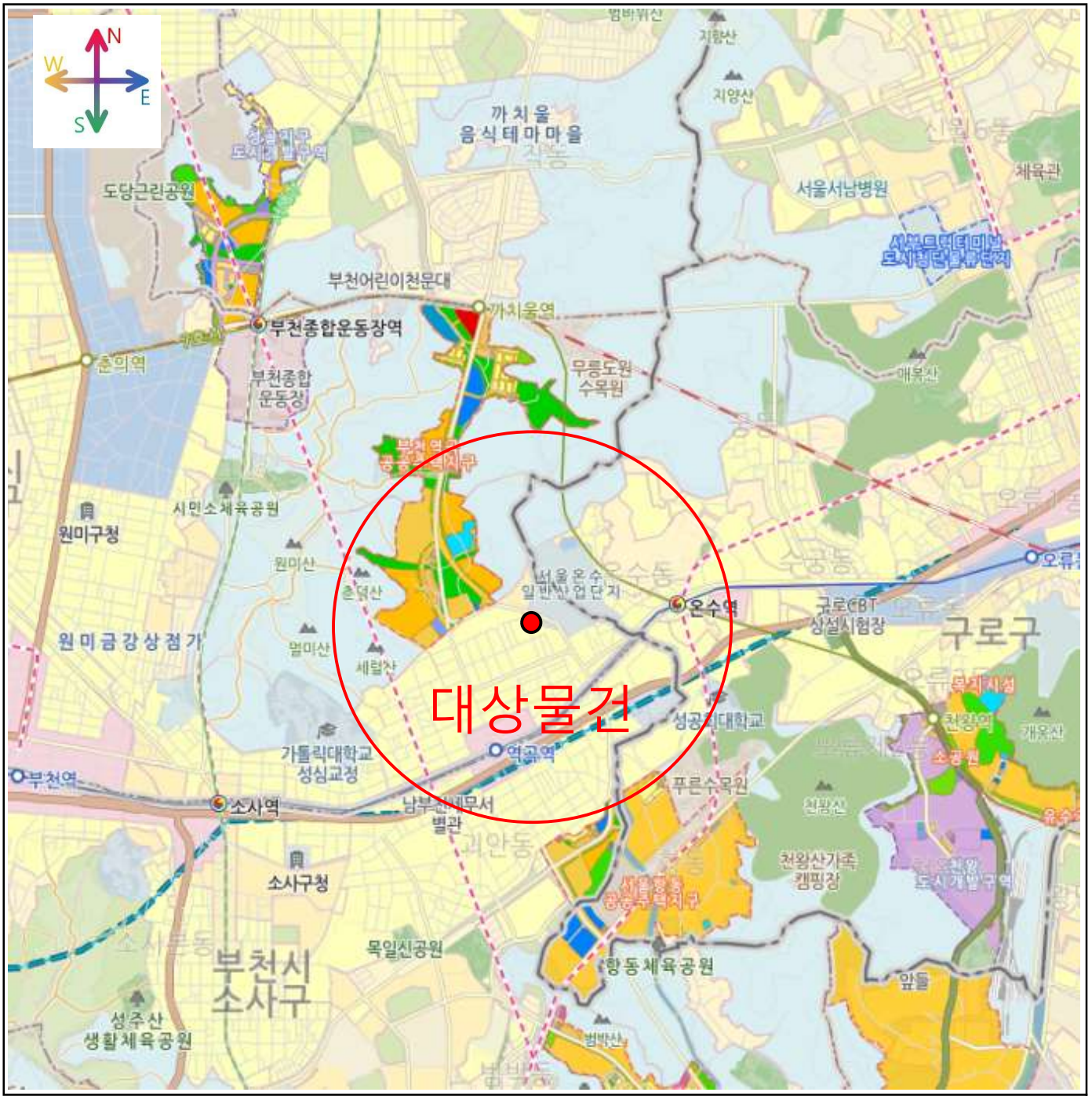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소 재 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13외 역곡1동이편한세상 제201동 제7층 제7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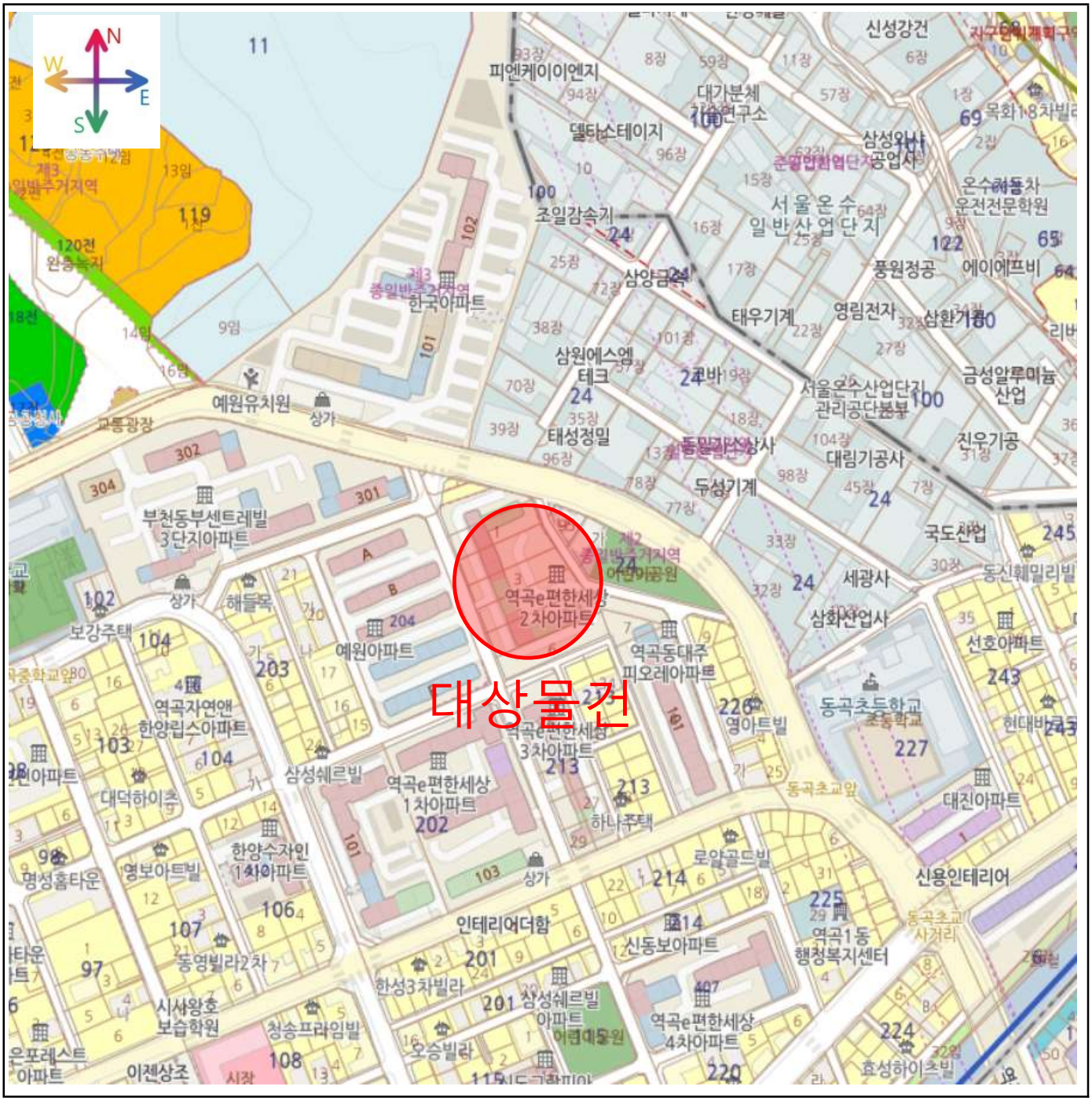

건 물 개 황 도

소 재 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13외 역곡1동이편한세상 제201동 제7층 제7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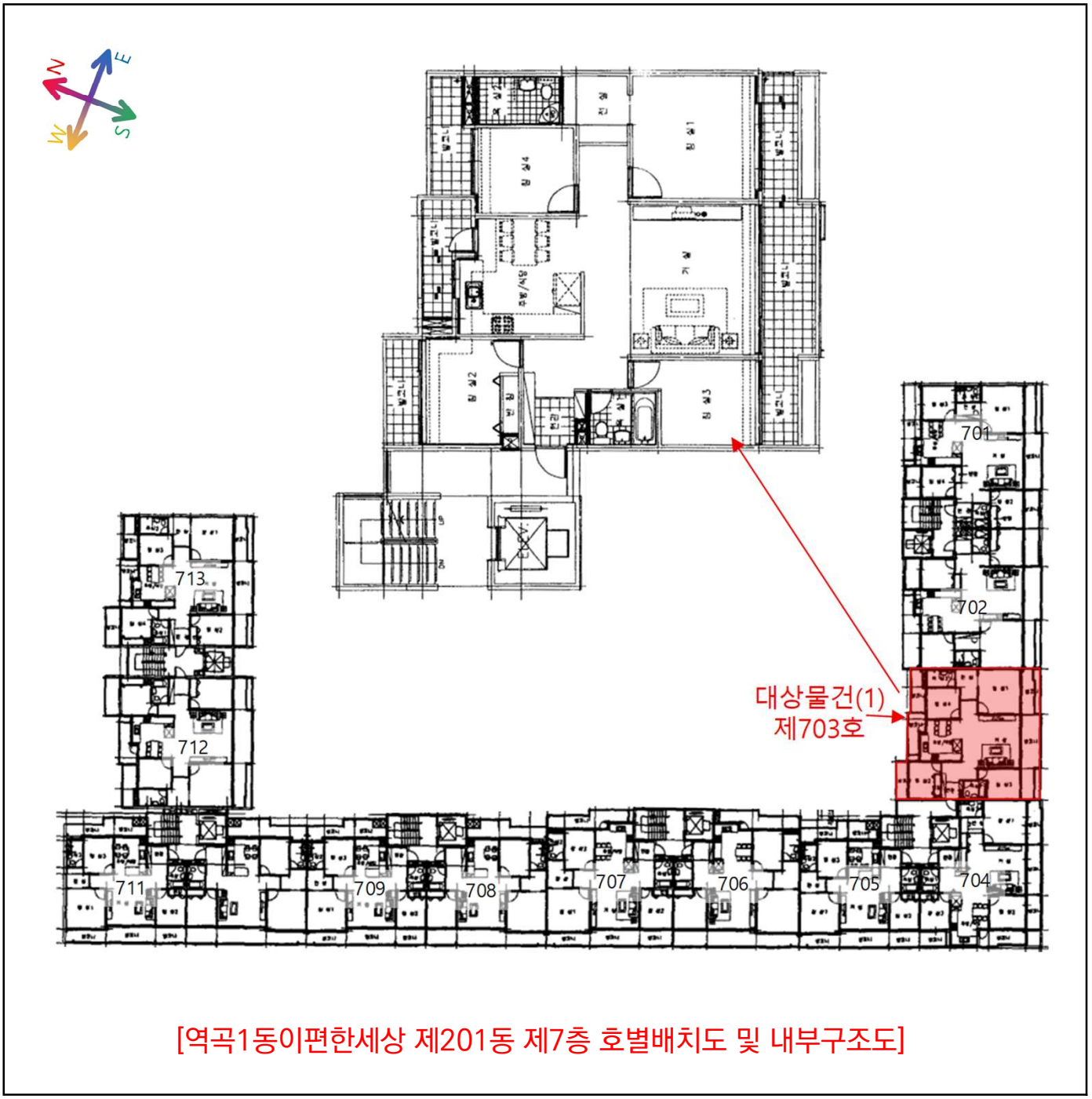

[역곡1동이편한세상 제201동 제7층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사 진 용 지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 전경 – 내측에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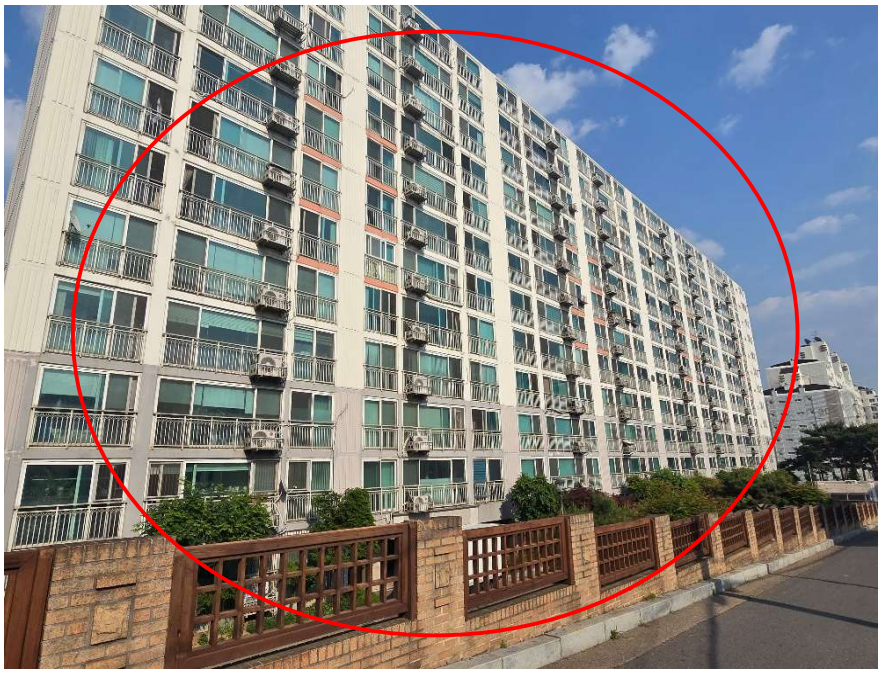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 전경 – 북서측에서 촬영

사 진 용 지



공동현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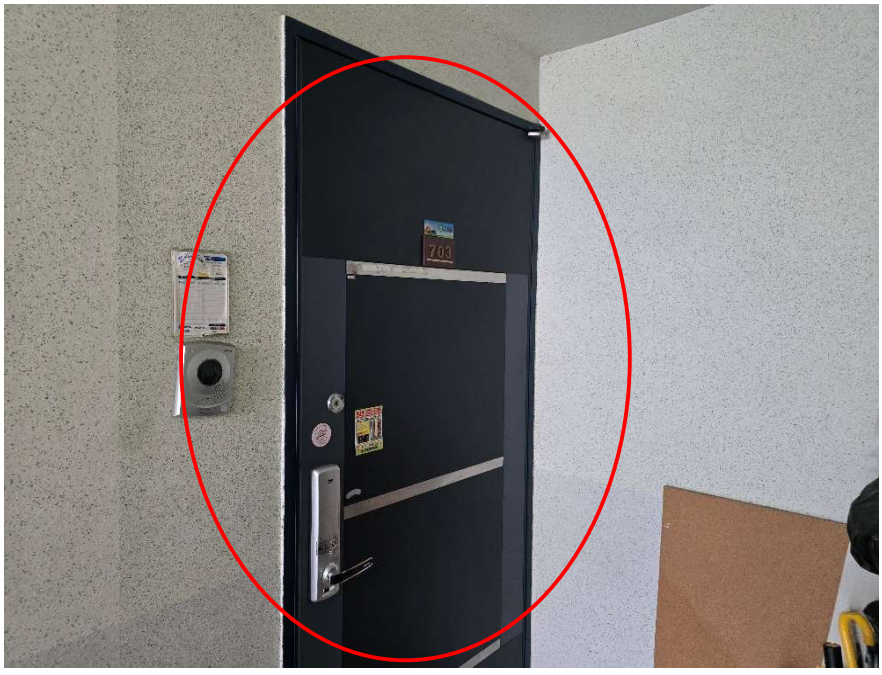

대상물건 현관문